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2 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규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제14조(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)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(이하 “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 1. 18.> 1. 컴퓨터 2. 모니터 3.~ 19. (생략)	제14조(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)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(이하 “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 1. 18.> 1. 삭제 <2021. 00. 00.> 2. 삭제 <2021. 00. 00.> 3.~ 19. (현행과 동일)	○ 컴퓨터, 모니터 삭제
[별표 2]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(제13조제1항 관련) 1. 컴퓨터 2. 모니터 3.~ 24. (생략)	[별표 2]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(제13조제1항 관련) 1. 삭제 <2021. 00. 00.> 2. 삭제 <2021. 00. 00.> 3.~ 24. (현행과 동일)	○ 컴퓨터, 모니터 삭제